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월지급식글로벌멀티에셋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0 년 04 월 28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투자위험등급	5 등급 (낮은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4 등급 (보통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투자위험등급	5 등급 (낮은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4 등급 (보통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0 년 04 월 28 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4.51%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8.04%임에 따라 6 등급 중 4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SmartUpPlus 포커스포트폴리오증권투자신탁(제 4 호)[주식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0 년 04 월 28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0 년 04 월 28 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에 관한 사항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0.42%임에 따라 6 등급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4.88%임에 따라 6 등급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글로벌리츠부동산투자신탁[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추가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0 년 04 월 28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 **과세** (신설)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과세특례 거주자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9.9%(소득세 9%, 지방소득세 0.9%)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 81 조의 4 에 따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투자자(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에 한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 59 호의 3 서식에 따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 분리과세등 적용을 받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부터 3 년이 지나기 전에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이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오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해지 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에 해당되어 해지시까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0 년 04 월 28 일 -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추가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변경전 1]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변경후 1]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경전 1]

(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 종류 C-PE 수익증권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공제제도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2%
연금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 수령시 과세 (통상적인 경우)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외 수령시 부득이한 경우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 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연금외 수령시 과세 (부득이한 경우)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3 년 2 월 28 일 이전에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 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의 동 투자신탁 수익증권 계좌는 소득세법시행령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보아 과세하되, 다음의 사항은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합니다.

[종전 가입자에 대한 특례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해지가산세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
특별 중도해지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저축자의 사망, 퇴직, 해외이주, 폐업 저축자의 3 개월 이상 치료,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특별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사망으로 인한 해지시 과세	연금소득 5.5%(종합과세 가능)

* '13.1.1~'13.2.28 가입한 계좌의 특별 중도해지 사유 및 과세는 소득세법을 적용
(단, 사망으로 인한 해지는 연금소득 5.5% 과세)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2014.1.1 부터)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4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소득세법」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후 1]

(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 종류 C-PE 수익증권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단,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 만원 이내 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 (공적연금소득,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 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으로 3.3 ~ 5.5%(분리과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종류 C-P2, 종류 C-P2E 수익증권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2022 년 12 월 31 일까지「소득세법」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② 과세이연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 다만,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연간 1200 만원 이하인 경우「분리과세」로 선택 가능합니다.

(7)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4
대상자	세법상 거주자
가입기간	**2020 년 1 월 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2020년 1월 1일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9조])
계약기간	**3년 이상**
가입한도	**1인당 투자금액 합계액 5천만원**
대상펀드	1.「자본시장법」제 229 조제 2 호에 따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2.「부동산투자회사법」제 49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3.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 공모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자본시장법」제9조제18항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및「부동산투자회사법」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세제혜택	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소득세법」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 적용(지방소득세 포함 9.9%)**
세제혜택 방법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투자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감면세액 추징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투자자가 각 집합투자증권 투자일부터 3 년이 되는 날 이전에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투자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추징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투자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특별해지) 1. 거주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2.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6 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거주자의 3 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다. 공모부동산투자기구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라.「자본시장법 시행령」제 223 조제 3 호 및 제 4 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특별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

	고서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여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 81 조의 4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지방세법 등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아시안리츠부동산투자신탁[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추가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0 년 04 월 28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 **과세** (신설)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과세특례 거주자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9.9%(소득세 9%, 지방소득세 0.9%)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 81 조의 4 에 따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투자자(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에 한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 59 호의 3 서식에 따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 분리과세등 적용을 받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부터 3 년이 지나기 전에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이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오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해지 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에 해당되어 해지시까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0 년 04 월 28 일 -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추가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변경전 1]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변경후 1]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경전 1]

(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 종류 C-PE 수익증권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공제제도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2%
연금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 수령시 과세 (통상적인 경우)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외 수령시 부득이한 경우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 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연금외 수령시 과세 (부득이한 경우)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3 년 2 월 28 일 이전에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 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의 동 투자신탁 수익증권 계좌는 소득세법시행령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보아 과세하되, 다음의 사항은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합니다.

[종전 가입자에 대한 특례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해지가산세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
특별 중도해지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저축자의 사망, 퇴직, 해외이주, 폐업 저축자의 3 개월 이상 치료,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특별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사망으로 인한 해지시 과세	연금소득 5.5%(종합과세 가능)

* '13.1.1~'13.2.28 가입한 계좌의 특별 중도해지 사유 및 과세는 소득세법을 적용
(단, 사망으로 인한 해지는 연금소득 5.5% 과세)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2014.1.1 부터)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4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소득세법」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후 1]

(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 종류 C-PE 수익증권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단,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 만원 이내 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 (공적연금소득,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 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으로 3.3 ~ 5.5%(분리과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종류 C-P2, 종류 C-P2E 수익증권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2022 년 12 월 31 일까지「소득세법」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② 과세이연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 다만,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연간 1200 만원 이하인 경우「분리과세」로 선택 가능합니다.

(7)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4
대상자	세법상 거주자
가입기간	**2020 년 1 월 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2020년 1월 1일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9조])
계약기간	**3년 이상**
가입한도	**1인당 투자금액 합계액 5천만원**
대상펀드	1.「자본시장법」제 229 조제 2 호에 따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2.「부동산투자회사법」제 49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3.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 공모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자본시장법」제9조제18항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및「부동산투자회사법」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세제혜택	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소득세법」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 적용(지방소득세 포함 9.9%)**
세제혜택 방법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투자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감면세액 추징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투자자가 각 집합투자증권 투자일부터 3 년이 되는 날 이전에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투자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추징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투자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특별해지) 1. 거주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2.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6 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거주자의 3 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다. 공모부동산투자기구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라.「자본시장법 시행령」제 223 조제 3 호 및 제 4 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특별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

	고서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여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 81 조의 4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지방세법 등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